

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 (일반회계)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
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예산이용(| 0 건) | 0 원 |
| 2. 예산전용(| 8 건) | 499,500,000 원 |
| 3. 예산이체(| 199 건) | 13,860,514,000 원이며 |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 (기타특별회계)

지방재정법 제47조,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
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. 예산이용(| 0 건) | 0 원 |
| 2. 예산전용(| 0 건) | 0 원 |
| 3. 예산이체(| 10 건) | 1,933,259,000 원이며 |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